[청구인] 〇〇〇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1. 10. 청구인에게 한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 ○○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고 생계의 사유로 인터넷방송에 대한 겸직허가를 승인받아 복무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넷방송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2017. 11. 10.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제3호에 의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에는 겸직허가 제한 사유라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취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생계의 사유로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프로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활동의 경우는 겸직허가 제한 사유라는 이유로 2017. 11. 10.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승인을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이 허가받은 인터넷 방송의 경우 방송을 위한 프로 자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사람이든 제한 없이 방송할 수 있고, 방송하는 대다수 사람이 프로선수가 아니고, 세간의 인식으로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을 프로선수라 일컫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때, 인터넷 방송을 프로선수의 활동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프로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는 제한 사유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겸직 신청 시 인터넷 방송 분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으며 네이버 인물 정보에 ○○○으로 검색하면, 프로게이머로 현출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 관련 수익 활동을 한 것은 명백히 프로게이머로서의 영위 활동으로인정되고, 겸직취소 처분 시 병무청 사회복무과와 협의를 통하여, 겸직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겸직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프로게이머의 겸직 제한 검토에 대한 병무청 질의회신 또한 프로선수・연예인 등 각종 전문직종의 겸직허가는 생계의 사유로인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허가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프로게이머의 겸직 제한 또한 타당하다는 질의회신을 받아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제33조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제28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 ○○'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워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 2) 청구인은 2017. 8. 24. 피청구인에게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자택에서 인터넷방송 활동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서 생계유지 사유로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 3) 2017. 10. 25.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인터넷방송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은 2017. 11. 10. 「사 회복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 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는 제한 사유임을 알려주고 겸직허가 를 취소 통보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병역법」제33조제1항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8조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 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에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e-스포츠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프로게이머가 아니며 프로게이

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프로게이머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네이버 인명 정보에 프로게이머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을 프로게이머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서울대 출신 프로게이머로 유명세가 있었고,실제로 프로게이머로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보아 프로게이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은 방송을 위한 프로 자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람이든 제한 없이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방송을 하는 대다수 사람이 프로선수가 아니고, 세간의 인식으로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을 프로선수라 일컫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때, 인터넷 방송을 프로선수의 활동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프로게이머로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로서 인터넷에서 게임과 관련된 방송을 하여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을 프로선수의 활동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제3호 규정에서 겸 직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을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으로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프로게이머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프로게이머는 통상적으로 프로선수라 여겨지지 않으므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게이머를 병무청이 임의로 전문직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과거에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본인이 생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거에 프로게이머 활동을 했었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복무 중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생계유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단순 근로를 통한 겸직을 허가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겸직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취지는 부의 축적수단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완화하여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함에 있다고 해석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28조제3항제3호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볼 때 예시적 열거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프로게이머를 전문직종으로 분류하여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주체자를 프로선수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프로게이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겸직을 하지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